

# [제 1387 호]

2017년 7월 4일(화)

# 고양시보



## 차 례

###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 2017-1170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 2017-1175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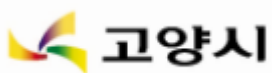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7-21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12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 2017-11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18호선 외 1개소 (동산취락 내)]사업 실시계획고시 전 열람 정정 공고      13

# Goyang City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 기준을 정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주택법」 제2조

-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7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택과 주택정책팀(031-8075-3113)
- 팩 스 : 031-8075-493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을 “영 제5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주 택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효 상
	팀 장 성 명	주택정책팀장 양 현 종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준 영 (031-8075-311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조(주민공동시설)</b>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b>&lt;신설&gt;</b></p>	<p><b>제3조(주민공동시설)</b>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55조의2제6항.....</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b>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b></p> <p>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p> <p>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p> <p>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p>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고양시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위탁고용근로자 및 공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 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12월 31일” 에서 “9월 15일” 로 앞당겨 다음 해 예산안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7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지역경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지역경제과 노사문화팀 (031-8075-3563)
- 팩 스 : 031-8075-491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 31일까지” 를 “9월 15일까지”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이 완 범
	팀 장 직위·성명	노사문화팀장 최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현 나 (031-8075-356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 및 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적용대상)</u> ① 시장 및 출자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② (생 략)</p> <p><u>제5조(생활임금의 결정)</u>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 ⑤ (생 략)</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적용대상)</u> ①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u>제5조(생활임금의 결정)</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9월 15일까지.....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p>

##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07월 04일

고양시 장 (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전	304,275
답	183,130
과수원	222,492
목장용지	329,125
임야	92,627
광천지	-
염전	-
대	1,654,969
공장용지	622,839
학교용지	1,503,838
주차장	1,192,513
주유소용지	1,747,676
창고용지	594,153
도로	428,050

철도용지	450,875
제방	81,787
하천	100,253
구거	93,295
유지	385,723
양어장	380,670
수도용지	250,115
공원	476,015
체육용지	423,046
유원지	633,320
종교용지	1,233,367
사적지	1,010,189
묘지	65,402
잡종지	821,638

### 부 칙

1. 위 지목별 평균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활용하고자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무시하고 지목별로 면적가중 평균한 지가로써 실제 토지이용 상황에 따른 평균지가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18호선 외 1개소 (동산취락 내)]사업 실시계획고시 전 열람 정정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공고 제2017-1133(2017. 6. 23.)호 공고되어 공람 중인 덕양구 동산동 63-3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3-418호선 외 1개소) 사업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상 면적 오류로 인하여 열람 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7월 4일

### 고 양 시 장

####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 소로3-418호선

- 시점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17번지
- 종점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15-7번지

##### ○ 소로3-419호선

- 시점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35번지

- 종점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소로3-418호선, 소로3-419호선 (동산취락 내 도로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결정	소로	3	418	6.0	253	전체 : 1.601m <sup>2</sup>	
금회시행	소로	3	418	6.0	58	금회시행 : 416m <sup>2</sup>	
결정	소로	3	419	6.0	33	전체 : 204m <sup>2</sup>	
금회시행	소로	3	419	6.0	7.5	금회시행 : 60m <sup>2</sup>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화정동)
- 성명 : 고양시장(덕양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동산동	315-7	구	146	46	건설부	국			
2	"	63-5	대	506	80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8-1105	이유선 외 1인			
3	"	63-47	도	14	14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6	창릉동 제2동 마을회관			
4	"	63-35	대	118	118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7	임석정			
5	"	63-7	대	345	8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7	임석정			
6	"	63-33	도	41	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8	유경희			
7	"	63-9	대	354	46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25, 106동	이준근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	
8	"	63-36	대	325	84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4번길 30, 425동 902호	정미선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협 협동조합	
9	"	63-50	대	170	5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4번길 30, 425동 902호	정미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은행	
합계				2,019	476					

